

신구조문대비표  
「관세법 시행규칙」

관세법 시행규칙 [기획재정부령 제933호, 2022. 9. 6., 일부개정]	관세법 시행규칙 [기획재정부령 제936호, 2022. 9. 16., 일부개정]
<p><b>제1조의2(과세환율)</b> ①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「관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에 따른 날(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)이 속하는 주의 전주(前週)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(對顧客)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. 다만,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.</p> <p>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 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조의2(과세환율)</b> ① 관세청장은 「외국환거래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「관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에 따른 날(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)이 속하는 주의 전주(前週)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. &lt;단서 삭제&gt;</p> <p>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